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24,757,091	12,742,713
일반회계	299,398,762	8,981,963
특별회계	125,358,329	3,760,750
기타특별회계	125,358,329	3,760,750
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1,083,084	32,493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1,155,702	34,671
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	10,000	300
주택사업특별회계	94,844	2,845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04,354,450	3,130,634
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	222,329	6,670
치수사업특별회계	519,699	15,591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300,000	9,000
기반시설특별회계	1,000	30
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	17,617,221	528,51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646,698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